[대만] 2017년 3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市售奶油, 乳脂, 人造奶油與脂肪抹醬之品名及標示規定

(시판 버터, 유지방, 마가린 및 지방스프레드 제품명 및 표기 규정)」 제정

○ 문서발송일자 : 2017년 2월 6일, 대만위생복리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

-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51303972號 公告)

○ 시행일자 : 수정 규정 시행일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규정의 주요내용

(가)「奶油(버터)」 및 「乳脂(유지방)」표기 제품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품명 표기가「奶油(버터)」인 것은 유제품에 의해 만들어진 유지방 제품이어야 하며 살균, 믹싱, 정제 등을 거쳐 유중 수적형태(water in oil, 에멀젼형태)로 제조된 것으로 유지방 함량이 80%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 품명 표기가「乳脂(유지방)」인 것은 유제품 중 지방을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유중 수적형태(water in oil, 에멀젼형태)로 만든 것으로 냉동 온도 이상에서는 유동적 또는 불유동적인 액체 상태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유지방 함량이 10% 이상 80% 미만인 제품을 말한다. 제품명은 또한 「食用乳油(식용크림)」 「鮮奶油(생크림)」 「鮮乳油(생크림)」으로도 표기 할 수 있다.

(나)「人造奶油(마가린)」및「脂肪抹醬(저지방마가린, 지방스프레드)」제품은 식용유(食用油) 지방에 적당한 물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유화, 급냉동, 반죽(급냉동, 반죽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등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가소성 및 유동성이 있는 바르는 제품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人造奶油(마가린)」 : 식용유 지방 함량이 80% 이상인 것
- 「脂肪抹醬(지방스프레드)」 : 식용유 지방 함량이 10% 이상 80% 미만의 것
- 「식물성 버터」의 문구를 제품 라벨링에 표기하여서는 안 된다.

○ 시사점:

- 대만 식약처는 버터, 마가린 등 유지방 제품에 대한 정의 관련 상품의 라벨링 표기 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천연 및 인조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식품 對대만 수출시 신규 라벨링 표기 사항 및 시행일에 주의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自動販賣機販售食品之標示規定(자동판매기 판매식품의 표기규정)」초안 발표

○ 문서발송일자 : 2017년 3월 9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51302981號 公告)

○ 확정소요기간 : 초안 발표 후 60일간 의견 수렴 후 확정

○ 초안 주요 상세 내용 :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본 규정은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자동판매기업자는 자동판매기(약칭 자판기이라 칭함)를 설치한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3) 자동판매기업자는 자판기 외부에 명확하게 명칭,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한다.

(4) 자동판매기업자는 그 자판기에 판매하는 식품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분 표기 한다.

① 포장식품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규정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벌크식품(비포장식품) : 제품명, 내용물 및 식품첨가물 명칭, 식품책임업체 혹은 제조업체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업체등록번호, 원산지, 유효일자, 알레르기 유발성 성분, 유전자변형식품원료, 재혼합 육류성분

③ 자판기제조식품 : 제품명, 내용물 및 식품첨가물 명칭, 식품책임업체 혹은 제조업체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업체등록번호,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성 성분, 유전자변형식품원료, 재혼합 육류성분

(5) 전 항의 알레르기 유발성 성분,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및 제혼합 육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알레르기 유발성 성분 포함 : 「식품 알레르기 표시 규정」

②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포함

· 벌크식품(비포장식품) : 「유전자변형식품 원료가 포함된 벌크식품 표시사항」

· 자판기제조식품 : 「직접음식공급 장소의 유전자변형식품 원료가 포함된 식품의 표시사항」

(6) (4)번의 ②, ③ 의 표기사항에 관하여 벌크식품의 “유효일자“를 외포장 또는 용기위에 표기해야 하는 것 외 기타 표기 항목은 카드, 라벨, 표시판를 걸거나 세우거나 붙이는 등 기타 방식으로 명확히 보이게 하여야 한다. 또한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할 경우 글자 길이 및 폭은 0.2cm보다 작게 표시 하면 안 되고, 기타 표시판도 2cm보다 작으면 안 된다.

○ 시사점 : 식품 자동판매기 설치 및 사용률이 증가되고 있으나 무인 판매 형태로 인한 구매 상품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려움에 따라 상품에 대한 명확한 표기 필요성에 의해 제정됨. 대만 시판 판매 식품이 라벨링 규정 등을 비준수할 경우 판매중지 및 폐기처분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만 라벨링 규정에 대한 숙지 및 수출 시 주의가 요구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2017년 농축산품 특별방위조치 기준초과관세 (額外關稅) 관련 규정 주의사항

「農產品採取特別防衛措施額外關稅之課徵規定及相關作業注意事項」

○ 2011년부터 12.31 제정 후 매년 업데이트 됨

○ 대만 재정부 관무서 공고

○ 주요내용

(1) 대만 재정부는 특별방위조치 기준 초과 관세(이하 초과관세) 징수를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특별히 정한다.

(2) 초과관세의 적용범위는 땅콩, 동양배, 설탕, 마늘, 빈랑, 닭고기(닭다리 닭날개 및 기타 닭고기 부위), 액체 유제품(신선우유 및 기타 액체유제품), 동물 내장(가축 및 가금류의 내장 포함), 팥, 표고버섯, 유자, 감, 건조 원추리, 돼지복부육 및 식용 쌀(벼, 현미, 백미 및 쌀제품)등 15종 품목으로 지정

(3) 초과관세는 제(2)에 나열된 수입물품 누적수입량이 그 기준 수량을 초과하였거나 그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징수한다. 또한 상기 2가지 기준으로 계산 후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 단, 동물의 내장은 누적 수입량이 기준 수량 초과일 경우로만 초과관세를 계산한다.

(4) 기준수량으로 초과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물품의 기준수량은 세계무역조직 농업협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초과관세의 징수방법 및 한도, 징수기간은 아래와 같다.

① 징수 방법

1) 누적수입량은 수입쿼터제 증빙을 구비한 것과 구비하지 않은 수입수량을 포함한 것으로 연내 수입신고한 시간의 전후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누적수입량이 기준수량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준초과관세의 징수 시점으로 정한다. 단 수입쿼터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 징수를 하지 않는다.

2)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우편 배송 수입신고도 누적수입량으로 포함하며 규정에 따라 기준초과관세를 적용한다.

3) 「G1(외국화물수입신고서)」 및 「D2(보세물품보세창고반출 후 수입신고서)」도 누적수입물량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삼각무역화물, 반입억류활물, 반송 또는 포기화물 및 국산물품 수입 후 재수출 대기품 (세관납세법 코드 90.91.92.94.71)은 제외한다.

4) 여러 수입신고서 총량이 동시 기준수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입신고서 물량을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기준초과관세 면제 물량을 산출한다. 동일수입신고 물품이 기준수량을 초과할 시 수입신고서 내의 항목의 선후를 기준으로 면제 수량을 산출한다.

5) 누적수입량은 대만 관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게시하며 누적수입량이 기준수량의 90%에 도달했을 시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간 선후 순서 확인하고 기준초과관세 대상 화물인지 확정 및 관세 징수 후 반입이 가능하다. 수입자가 선행반입이 필요하다면 기준초과관세 대상 물량에 대한 보증금 지불 후 수입검사신청이 가능하다.

6) 수입자가 수입세칙코드 신고 오류로 인해 세관이 확정한 수입코드로 기준초과관세 품목류로 분류되었을 경우 세관이 확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누적수입량을 계산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이미 기준수량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②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수량부터 원래 징수 관세액의 33.3%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③ 초과관세의 징수 기간은 기준수입수량을 초과한 시점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기준가격으로 초과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세계무역조직 농업협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사용하여 1990년부터 1992년 KG당 CIF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 일부 실제 수입 실적화물이 아닌 것은 이웃 국가의 CIF 가격 및 관세 계산 등 국외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 산출한다. 그 초과관세의 징수 방법 및 한도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초과관세 징수방법

1) 관세법에 의거된 수입물품의 완세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수입가격-기준가격)이 기준가격의 10% 이상인 경우 세계무역조직 농업협정 제5조 제5항의 규정으로 초과관세를 추가 부과한다. 단 관세쿼터량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제외 된다.

2)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우편 배송 수입신고도 누적수입량으로 포함하며 규정에 따라 초과관세를 적용한다. 단 수입신고서가 없는 자는 제외 한다.

② 초과관세의 징수 한도

1) 대만 국내 환율로 계산한 수입가격과 본 항에 정의된 기준가격의 차액이 기준가격보다 10% 이내일 경우 초가 관세를 지불 하지 않아도 된다.

2) 수입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이 기준 가격보다 10% 초과 40% 이하인 경우 차액의 30%의 초과관세를 징수한다.

3) 차액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는 차액의 50%의 초과관세를 징수하고, 2)의 초과관세를 추가한다.

4) 차액이 60% 초과 70% 이하인 경우는 차액의 70%의 초과관세를 징수하고, 2), 3)의 초과관세를 추가한다.

5) 차액이 75% 초과한 경우는 차액의 90%의 초과관세로 2), 3), 4)의 초과관세를 추가한다.

붙임 : 1. 2017년도 농축산품 특별방위조치 실시 품목의 기준가격
2. 2017년도 농축산품 특별방위조치 실시 품목의 기준수량

붙임 1.

<2017년도 농축산품 특별방위조치 실시 품목의 기준가격>

해당 품목		해당 수입세칙코드(CCC CODE)	기준가격 (TWD / KG)
땅콩	껍질이 있는 땅콩	12023010、12024100、20081111、20081191	11.8
	껍질 없는 땅콩 땅콩 파우더 및 혼합땅콩	12023020、120224200、12089011、12089021、20081112、20081192、20081942	18.1
	땅콩오일	15081000、15089000	25.9
동방 배		08083090	54.0
마늘		07032010、07032090、07129040	9.7
빈랑		08028000	50.0
닭고기	닭다리 및 닭날개	02071311、02071411、02109912、169023210	30.0
	기타 닭고기류	02071100、02071200、02071319、02071419、02109919、16023220	42.0
유제품(원/lm)		04011010、04012010、04014010、04015010、04029910、04011020、04012020、04014020、04015020、04029920、04029992、04039029、04039040、04039059、04039090、18069053、18069055、19019025、19019027	17.0
팥		07102910、07133200、11061010、200479010、20055110、20055910、20060011、20060025	14.4
표고버섯		07123920	302.15
유자		08054020	10.4
감		08107000	23.4
말린 원추리		07129050	13.7
돼지복부살		02031911、02031991、02032911、02032991	30.0
식용 쌀	잡곡	10061000	6.0
	현미	10062000	7.0
	백미	1063000、10064000	8.0
	쌀 제품	11029011、11029019、11031930、11032010、11041910、11042920、11081910	9.0

※ 기준 가격은 1990년부터 1992년 KG당 CIF가격의 평균치이며 일부 실제 수입실적 아닌 상품은 이웃 국가의 CIF 가격 등 자료로 추정 계산함

붙임 2. **<2017년도 농축산품 특별방위조치 실시 품목의 기준수량>**

품목		해당 수입세칙코드	평균소비량<2013-2014년>	평균수입량<2013-2014년>	시장점유율(%)	기준율(%)	소비변동율<2014-2015년>	기준수량(톤)
땅콩	껍질이 있는 땅콩	12023010、12024100、20081111、20081191	64,949.2	6,633.2	10.21	110	-7,508.3	6,964.9
	껍질없는 땅콩 땅콩파우더 및 혼합 땅콩	12023020、120224200、12089011、12089021、20081112、20081192、20081942						
	땅콩오일	15081000、15089000						
동양배		08083090	133,024.3	9,623.7	7.23	125	-7,559.7	10,104.9
마늘		07032010、07032090、07129040	54,550.8	4,513.8	8.27	125	-9,909.9	4,739.5
빈랑		08028000	119,348.2	14.3	0.01	125	-8,360.6	15.0
닭고기	닭다리 및 닭날개	02071311、02071411、02109912、169023210	283,071.4	142,403.6	50.31	105	38,608.4	178,004.5
	기타 닭고기류	02071100、02071200、02071319、02071419、02109919、16023220	211,122.9	1215.5	0.58	125	-3,654.9	1,276.3
유제품	신선우유	04011010、04012010、04014010、04015010、04029910	315,697.4	14,582.4	4.62	125	11,599.6	18,228.0
	기타 형태의 유제품	04011020、04012020、04014020、04015020、04029920、04029992、04039029、04039040、04039059、04039090、18069053、18069055、19019025、19019027	97,611.7	8,233.9	8.44	125	29,907.6	10,292.4
동물내장	가금류 내장 등	02071399、02071429、02072690、02072729、02074490、02074590、02075490、02075590、02076030、02076090、02109929、05040022、16023120、6023290、16023920、16029040	40,986.2	429.8	1.05	125	-3,828.0	451.3
	가축류 내장 등	02063020、02064930、05040021、16024930	120,117.8	22,247.7	18.52	110	6,155.1	27,809.6
팥		07102910、07133200、11061010、200479010、20055110、20055910、20060011、20060025	13,307.9	2,580.4	19.39	110	1,754.9	3,225.5
건표고버섯		07123920	5,243.9	167.7	3.20	125	-72.0	176.1
유자(포멜로)		08054020	75,163.2	0.2	0.00	125	-8,866.2	0.2
감		08107000	65,765.4	30.7	0.05	125	-11,826.4	32.2
건조 원추리		07129050	340.9	8.0	2.35	125	-8.6	8.4
돼지복부살		02031911、02031991、02032911、02032991	69.362.9	10,989.9	15.84	110	3,252.0	13,737.4
식용 쌀		10061000、100620001063000、10064000、11029011、11029019、11031930、11032010、11041910、11042920、11081910	1,208,586.4	134,553.5	11.13	110	2,465.1	150,474.0

※ 설명

1 기준 수량 = 초근 3년 평균 수입량 × 기준율(%) + 최근 연도 소비 변동량

2 농업협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소비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준수량은 최근 3년 평균 수입량의 1.25배로 하고, 또한 국내 소비량 고려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수량은 최근 3년 평균 수입량의 1.05배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땅콩, 동양배, 마늘, 빈랑, 기타 닭고기류, 가금류 내장 등, 건표고, 유자, 감 및 건조 원추리는 최근 3년 평균수입량의 1.05배의 원칙으로 조정 계산함. 닭다리 및 날개, 신선유유, 기타 액체 유제품, 가축류 내장, 팥 및 돼지복부살 등은 국내소비자량을 고려하지 않는 계산법으로 산출한다

3. 땅콩의 기준수량은 껍질이 있는 땅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수입산 껍질 벗긴 땅콩, 땅콩분말, 땅콩 오일은 껍질이 있는 땅콩 기준으로 누적수입량을 계산한다. 상기 땅콩 관련 상품을 껍질 있는 땅콩 비율로 환산할 경우 세관수입세칙 제98장 주석 3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 시사점

- 2017년도 특별방위조치 기준초과관세율은 대만 연간 수입기준수량 초과 후 적용되는 추가 관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시품목, 기준수량, 기준가격 등을 상세하게 숙지함으로써 건표고버섯, 쌀, 유제품, 기타 닭고기류 등 對대만 수출 품목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